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2.

정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19.

김병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3.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병기의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선 주)

### 1. 피해구제절차 등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등

□ 현행법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절차(제55조 및 제58조) 및 분쟁조정(제65조 및 제66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기간을 각각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처리기간 연장 시, 피해구제절차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 등에게 연장 사유, 기한 및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분쟁조정의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하고, 그 처리 기간 연장시 원장(피해구제절차) 및 조정위원회는 사유, 기한을 신청인 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당사자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시 원장(피해구제절차) 및 조정위원회(분쟁조정)가 연장 사유, 기한, 진행상황을 신청인 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 사건 당사자의 알권리 보호 및 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경우,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실제 피해구제절차의 평균 처리기간(2024년 기준 19.9일)보다 길고,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기간(2024년 기준 91.5일)보다 짧아 현실적인 제도운영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쟁조정 경우 신청건수가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현행법 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무조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구성상의 어려움 등으로 조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리기간 연장보다는 단독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의 경우 현행법상의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분쟁조정은 개정안의 60일도 초과한다는 점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은 큰 실익이 없으며, 처리기간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등 일반행정의 범위까지 법률로 규정 시 민원 업무 현장의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절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의 방법 또는 소장 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신청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피해자,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피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건

(사회적 배려계층 및 소액사건)은 481건의 신청을 받아 139건의 소송대리 및 303건의 소장작성을 통해 총 442건을 지원하였고, 집단 사건(다수 피해자)은 2022년도에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결정 불성립에 관련한 소송지원을 하였으며, 2025년 3월에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결제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불성립과 관련한 소송지원을 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개정안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소송지원 방법에 소송대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지원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소장 작성 대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개정안은 소송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나, 소송지원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소장 작성 대행도 소송지원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지원 업무의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는 의견으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